

瑞山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討 報 告 書

2001. 3. 28
産業建設委員會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2001. 3. 20
- 나. 提出者 : 瑞山市長
- 다. 回附日字 : 2001. 3. 21
- 라. 上程日字 : 2001. 3. 28

2. 提案說明要旨 (提案說明 : 上下水道事業所長 文英燮)

가. 改正理由

- '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가동됨에 따라 하수처리 원가가 급격한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현행 하수도요금으로는 많은 적자가 발생되어 재정의 악화는 물론 하수도시설의 확충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요금격차가 많아 형평성 문제로 요금의 불부합된 상태로 합리적 요금체계와 낮은수준의 하수도요금을 20% 수준까지 인상하고 주민의 부담을 고려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추진으로 재정의 적자를 연차적 해결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하수도요금 생산원가의 20% 수준으로 평균 107% 인상과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요금의 현실화로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체제로 조정함(안 제10조).

5.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됨에 따라 하수도요금의 생산원가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저렴한 상수도요금 및 하수처리요금으로 수돗물 낭비로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하수시설의 확충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연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의 적자를 해소하고 부족한 수자원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 현재 하수도요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전의 사용료 톤당 원가 150원 대비 65.3% 97원 부과하던 것을 종말처리장 준공 가동됨으로 2000. 8월 두원회계사무소에서 하수도요금 원가 용역결과 톤당 976원 산정되어 현행대비 9.89% 97원을 부과 톤당 873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평균 20% 인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1. 1. 10 서산시 공고 제11호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 내용은 없었으며, 또한 서산시 소비자정책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어 성안된 조례안 으로서,
- 본 조례안에서 현행 하수도사용료가 최고 297% 최저 121% 인상으로 주민의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이 되고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따라 원가상승과 계속 누적되는 재정의 적자 해소와 신규시설사업 확장을 위하여 현행원가 20% 인상하여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준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204호
의결 년월일	2001. . . . (제 회)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1년 3월 20일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04 호
----------	---------

제출년월일 : 2001. 3. 20.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가동됨에 따라 하수도 처리 원가의 급격한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대규모 적자발생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업종간 요금격차가 커서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함으로 인해, 현재 처리원가의 10%수준인 하수도 요금을 20%수준까지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가정용 요금을 현실화하여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갖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하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20% 수준으로 평균 107% 인상(안 제10조)
- 나. 가정용 요금의 현실화로 업종간 형평성 고려(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21조(사용료등)
- 나. 입법예고: 2001. 1. 10.
- 다. 서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2000. 12. 19) : 인상안 가결.

서산시조례 제 호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 별표1의 내용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하수도 사용요금표			[별표2] 하수도 사용요금표			
구분 업종별	사용요금		구분 업종별	사용요금		
	사용구분(m ³ /월)	m ³ 당 단가(원)		사용구분(m ³ /월)	m ³ 당 단가(원)	
가정용	· 1~10	40	가정용	· 1~10	119	
	· 11~20	60		· 11~20	143	
	· 21~30	80		· 21~30	178	
	· 31~40	110		· 31~40	226	
	· 41~50	140		· 41~50	297	
	· 51 이상	190		· 51 이상	369	
업무용	· 1~20	80	업무용	· 1~20	132	
	· 21~50	100		· 21~50	172	
	· 51~100	160		· 51~100	251	
	· 101~300	180		· 101~300	330	
	· 301 이상	210		· 301 이상	409	
영업용	· 1~30	100	영업용	· 1~30	211	
	· 31~50	150		· 31~50	274	
	· 51~100	200		· 51~100	400	
	· 101~500	260		· 101~500	526	
	· 501 이상	360		· 501 이상	635	
욕탕용	1종	· 1~500	220	1종	· 1~500	170
		· 501~700	230		· 501~700	230
		· 701~1000	250		· 701~1000	327
		· 1001 이상	290		· 1001 이상	422
	2종	· 1~200	260	2종	· 1~200	315
		· 201~300	280		· 201~300	536
		· 301~500	330		· 301~500	756
		· 501 이상	440		· 501 이상	977
산업용	1m ³ 당	120	산업용	1m ³ 당	200	

도내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2001년 2월말 현재)

시·군	원 가	단 가	부과율	비 고
평 균	260.7원	119.3원	51.2%	
천 안 시	262.83	129.66	49.3	2001년 50%인상 '94년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현재 3개소 건설중)
공 주 시	324.8	103.7	31.9	'95년 준공
보 령 시	189	113	59.8	2001년 준공예정
아 산 시	306.47	123	40.1	2000년 50%인상
서 산 시	150 (976)	97	65.3 (9.89)	() 2000. 8월 원가계산반영분
계룡출장소	337.2	92.9	27.6	'95년 준공 2001년 35% 인상예정
연 기 군	305.5	177.8	58.2	'98년 준공
예 산 군	210	198	94	2000. 6월 준공 종말처리장 비용 미반영